



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4. 2. 15.] [관세청고시 제2024-7호, 2024. 2. 15., 일부개정]

관세청(관세국경감시과), 042-481-7834

제16조(수입요건의 심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, 승인,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.

1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총포, 도검(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), 화약류 등
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
3. 「검역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식물방역법」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개, 고양이 등 동물류, 쇠고기·돼지고기·햄·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, 묘목류, 채소류, 절화류, 과일류 등(망고, 파파야, 오렌지 등을 말한다) 식물류 및 그 가공품,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
4. 「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·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약사법」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
5.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」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. 다만,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.

② 세관장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,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, 승인,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